정　　관

1994년 12월 27일 설립
2000년 5월 21일 개정
2009년 4월 28일 개정
2011년 3월 23일 개정
2011년 11월 23일 개정
2013년 4월 24일 개정
2014년 2월 27일 개정
2015년 12월 31일 개정
2020년 2월 17일 개정
2021년 7월 27일 개정
2021년 8월 9일 개정

재단법인 전고·북중 총동창회 장학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능 및 체육에 특수한 재질이 있고, 품행이 단정한 전주고등학교 재학생 및 전북도내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전주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그 재능을 신장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학문, 예술, 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전고·북중 총동창회 장학회라 한다.

제 3조(사무소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488번지 전주고등학교에 둔다.

제 4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비지원 사업

2. 재학생 및 졸업생의 대학 입학 장학금 지급

3. 교원복지 및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

4. 이민수(34회) 장학금 지급

5. 체육부후원

6. 장학숙 건립 및 유지관리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위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졸업동문의 찬조금

2. 본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기관 및 독지가의 찬조금

3.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및 기관의 출자금(동산 및 부동산 포함)

③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공익법인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의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전주고등학교의 재학생과 일반 중·고 재학생 및 전주고등학교 교원과 전주고등학교 졸업자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 6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를 가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조(재산관리)

① 제6조 제3항에 기본재산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조(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 사업의 회계와 수익사업의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에 관한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채권 및 채무)

채권의 포기와 수익사업상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호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법인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8인 (2015. 12. 31 개정)
2. 감사 2인

② 제1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③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설립당시의 이사중 7인과 감사 1인의 임기는 1/2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본 법인의 이사는 총 동창회장, 모교 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기타 이사와 감

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본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종족수)
①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체적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 회계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전북 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3. 법인의 목적사업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법인의 해산

② 이 회계의 투명성을 공시하기 위하여 홈페이지(jbjanghak.org)를 개설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공익위반 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 국세청,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게 한다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 임원 및 임기

연번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1	이 사 장	송 경 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57-1	4
2	부이사장	유 인 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69	2
3	〃	김 동 정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8-202	2
4	상임이사	김 광 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167-40	4
5	이 사	김 선 홍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 장미A. 14/205	4
6	〃	공 귀 섭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594-1	4
7	〃	송 주 형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35 무등맨션 403	2
8	〃	송 창 진	전주시 완산구 교동 2가 218-3	2
9	〃	오 복 동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서울A. 2/802	4
10	〃	김 진 기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719-14	2
11	〃	유 태 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02-10	2
12	〃	김 성 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68-6	4
13	〃	정 승 기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삼호A. 2/509	4
14	〃	이 의 철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387-4	2
15	감 사	전 팔 현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A. 102/706	1
16	〃	김 융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14-154 거성A. 다/508	2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 관은 200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1. 기본재산 총괄표

(1994년 12 월 27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	325,000,000	예 치 금
계	1	325,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25,000,000	예 치 금
계					325,000,000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

1. 기본재산 총괄표

(2000 년 5 월 21 일 변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	1,100,000,000	예 치 금
계	1	1,1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2000 년 5 월 21 일 개정)

재 산 명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100,000,000	예 치 금
계					1,100,000,000	

<별지3>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

1. 기본재산 총괄표

(2011 년 3 월 23 일 변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	1,250,000,000	예 치 금
계	1	1,250,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2011 년 3 월 23 일 개정)

재 산 명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100,000,000	예 치 금
계					1,100,000,000	

<별지4>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

1. 기본재산 총괄표

(2011 년 11 월 23 일 변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	1,336,350,000	예 치 금
계	1	1,336,35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2011 년 11 월 23 일 개정)

재 산 명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336,350,000	예 치 금
계					1,336,350,000	

<별지5>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

1. 기본재산 총괄표

(2014 년 2 월 27 일 변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	1,441,400,000	
계	1	1,441,400,000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2014 년 3 월 5 일 개정)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현 금	현 금	1	1,441,400,000	1,441,400,000	
계			1,441,400,000	1,441,400,000	

<별지6>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

1. 기본재산 총괄표 (2020 년 2 월 17일 변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500,000,000	
계		3,500,000,000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2020 년 2 월17 일 개정)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500,000,000	3,500,000,000	
계			3,500,000,000	3,500,000,000	

<별지6>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

1. 기본재산 총괄표

(2021년 8 월 9 일 변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750,000,000	
계		3,750,000,000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2021 년 8 월 9 일 개정)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750,000,000	3,750,000,000	
계			3,750,000,000	3,750,000,000	